자료

1.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
2. 도시계획법규칙중 개정령
3. 도시내 지하 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

건설부령제399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 규칙중개정령

1986년 4월16일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시장·운동장 및 철도"를 "시장·운동장·철도·여객자동차정류장·고속여객자동차정류장 및 전기공급설비(옥내형 변전시설에 한한다)로 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심신장애자등을 위한 편익시설)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심신장애자 및 노약자 등을 위하여 별표에 의한 각종 편익시설의 설치를 고려 하여야 한다.

제17조중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제1호중 "시외 및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를 "시내·시외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용자동차"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를 "고속버스운송사업용자동차"로 한다.

제20조 제1호 라목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정류장은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전세버스운송사업용자동차 정류장은 자연녹지지역에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유원지 안에서 유원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여야 하고 건축물중 숙박시설의 대지면적은 당해 유원지 면적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가. 3만제곱미터미만의 유원지 : 당해 유원지 면적의 100분의 10이내
   나. 3만제곱미터이상 10만제곱미터미만의 유원지 : 당해 유원지 면적의 100분의 15이내
   다. 10만제곱미터이상의 유원지 : 당해 유원지 면적의 100분의 20이내

제48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종교용시설(기존시설에 한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 (가스공급설비) 이 규칙에서 "가스공급설비"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는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말한다.

제71조제1호중 "준주거지역·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중 배관·정압기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제72조중 "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한다.

제73조중 "대리점"을 "일반대리점"으로 한다.

제76조 및 제78조중 "전기통신법"을 각각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한다.

제7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운동종목의 각종 운동장중 공공의용에 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운동장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 (학교의 종류) 이 규칙에서 "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을 말한다.

제86조중 "교육법"을 "교육법 및 유아교육진흥법"으로 한다.

제91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7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3조중 "소방용수리시설"을 "소방용수시설"로 한다.

제113조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2-2호"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하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중 간선하수도
2. 종말처리장

제116조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8호"를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18조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처리법"으로 한다.

제1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6조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이 규

칙에서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오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서 오물청소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종말처리시설 및 쓰레기종말처리시설과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와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127조제1호중 "산업폐기물시설"을"산업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쓰레기종말처리시설중 소각 또는 재생분류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 지역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중 "오물청소법 제9조"를 "오물청소법 제14조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거나 설치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1979년 7월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의 교지면적에 대한 조치) 1979년 7월1일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가 그 교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제8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에 미달 하더라도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이유

도시여건변화에 맞추어 도시계획 시설결정기준 및 설치기준을 일부 보완하고 도시계획시설설치에 관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같은 건축물안에 복합건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여객자동차정류장·고속여객자동차 정류장 및 전기공급설비를 추가함(영 제6조제3항).

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심신장애자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를 고려하도록함(영 제6조의2 및 별표).

다. 자동차정류장시설의 종류에 전세버스운송사업용자동차정류장을 추가 함(영 제19조제2항제1호).

라. 유원지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원지안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기준을 유원지 규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상향 조정함(영 제47조제9호).

마. 가스공급설비는 전용공업지역안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공급설비중 배관 및 정압기 등에 대하여는 그 설치대상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71조제1호).

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영제126조).

사. 쓰레기종말처리시설중 소각 또는 재생분류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녹지지역외에 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7조제1호).

〈건설부 제공〉

〔별표〕 심신장애자등을 위한 편익시설의 종류 (제6조의2 관련)

도시계획시설	편익시설
1. 횡단보도	1. 맹인용신호기 2. 점자블록등 시각장애자를 위한 유도시설 3. 횡단보도턱 낮추기(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2센티미터 이하로 낮춤) ※ 횡단보도턱 낮추기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2. 공원 및 유원지	1. 장애자용 변소 및 장애자용 주차장 2.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시설 3. 점자블록등 시각장애자를 위한 유도시설
3. 운동장	1. 장애자의 이용을 쉽게하기 위한 경사로 및 장애자용 승강기 2. 장애자용 변소 및 장애자용 주차장
4. 공용의 청사	1. 장애자의 이용을 쉽게하기 위한 경사로·장애자용 승강기 및 자동문
5. 철도	1. 점자블록 등 시각장애자를 위한 유도시설 2. 장애자용 변소 3.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개찰구 폭넓히기
6. 주차장	1. 장애자용 주차장 2. 시각장애자를 위한 주차장 표시
7. 자동차정류장(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정류장에 한한다)	1. 장애자의 이용을 쉽게하기 위한 경사로 2. 점자블록등 시각장애자를 위한 유도시설 3. 장애자용 변소 4.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개찰구 폭넓히기
8. 문화시설	1.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시설 2. 장애자용 변소 3. 점자블록등 시각장애자를 위한 유도시설
9. 기타시설	1. 각종 장애자용 편익시설중 필요한 시설

건설부령제400호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6년 4월16일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정류장
4.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중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5.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건설부훈령제708호

도시내 지하매설물설치에관한규정

1986년 5월 3일

도시내 지하매설물설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 적) 이 도시계획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5조제 2 항 제 3 호 및 제26조제 2 항제 3 호에 정하는 설계도서의 작성에 있어 지하매설물의 설치·개량 또는 교체등으로 인한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하매설물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매설물 관련사업"이라 함은 법 제 2 조제 1 항제 4 호의 도시계획사업과 택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주택건설촉진법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별표 1 에 기재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지하매설물 관련사업시행계획"이라 함은 제 1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으로서 별표 2 에 기재하는 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공동구"라 함은 전신, 전화, 전기, 가스, 상하수도, 중앙난방배관등 도시의 주요공급 및 기반시설중 2종이상을 동일구내에 공동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법 제 2 조 규정의 공동구를 말한다.
4. "단독구"라 함은 공동구 수용대상 시설중개시설만을 전용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5. "지하매설물"이라 함은 제 3 호의 공동구 및 제 4 호의 단독구와 공동구 또는 단독구내에 수용되지 않고 도로의 지하에 설치하는 전기선, 통신선, 상하수도관, 냉·난방배관 및 가스관등을 말한다.

제3조 (설치계획 수립) ①별표 3 에 기재한 도시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시가지 조성사업은 폭 12미터 이상인 도로설치계획)에는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허가 (이하 "인·허가"라 한다)권자는 사업시행인·허가시에 동 시행계획에 지하매몰설물 설치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그 내용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 협의) 사업시행 인·허가권자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대한 인·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의 내용) ①제 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에는 지하매설물 종류별 배치계획과 공동구 또는 단독구의 설치등 지하매설물의 설치방법 및 그 타당성 검토도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장래 지하매설의 설치등으로 인하여 도로가 중복굴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하매설물의 종류별 배치계획도는 사업시행계획 평면도에 지하매설물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방식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의 설치방식이나 위치 및 규격이 달라지는 구간에 대하여는 단면표시를 하고 별도로 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 2 항에 의하여 작성하는 단면도는 축적 100분의 1 이상의 도면으로 작성하되, 도로구조와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관계도면 송부)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이 포함된 사업을 인·허가하거나 동 사업을 준공한 때에는 동 사업 인·허가권자 및 사업시행자는 관계도면을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하매설물 관련사업

구 분	지하매설물관련사업의종류
1. 도시개발사업	
	①토지구획정리사업 : 도시계획법 제 12 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지구의 개발사업
	②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구의 개발사업
	③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 도시계획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지구의 개발사업
	④택지개발 촉진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지구의 개발사업
	⑤산업기지개발사업 : 산업기지개발 촉진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의 개발사업
	⑥주택건설사업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되는 사업
	⑦도시재개발사업 :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구역의 개발사업
2. 지하철 건설사업	
	①지하철 건설사업
3. 도로신설 및 확장사업	
	①폭원 25미터 이상 도로계획중 개설 및 확장대상사업

〔별표 2〕

○지하매설물관련 시행계획의 종류

지하매설물 관련사업	지하매설물관련사업 시행계획
1. 토지구획 정리	○실시계획
2.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행정청시행시) 또는 시행계획 (비행정청시행시)
3.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
4. 택지개발사업	○개발기본계획·실시계획
5. 산업기지개발사업	○개발기본계획·실시계획
6.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7. 도시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8. 지하철건설사업	○실시계획
9. 도로신설 및 확장사업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

〔별표 3〕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수립대상도시

서 울	청 주
부 산	대 전
대 구	전 주
인 천	광 주
수 원	여 천
성 남	경 주
안 양	마 산
부 천	울 산
안 산	창 원
강 릉	제 주
춘 천	

〈건설부 제공〉